

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10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운영요원 구성을 확대하고 토·일요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도 휴관없이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시설의 운영요원을 “공무원과 전문강사 등으로” 확대 구성(안 제6조)
- 토·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기휴무로 규정한 것을 청소년들의 이용을 확대코자 삭제(안 제10조제1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청소년기본법 제17조, 제18조
-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

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중 “ 운영요원을” 를 “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전문강사 등으로” 로 한다.

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휴관)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. 단,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운영요원) ①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.	제6조(운영요원)①----- -----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전문강사 등으로 -----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제10조(정기휴무) ①청소년문화의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.	제10조(휴관)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. 단,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
1. 토·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	
2.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.	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	

구미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와 정보화 능력함양 및 건전한 문화·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문화의집" 이라함은 문화생활공간, 문화체험공간, 문화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.
2. "정보자료실" 이라함은 각종 청소년 관련도서·비디오테이프·CD(가요, 팝, 가곡, 국악 등)를 구비하여 관리, 대여,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.
3. "인터넷부스" 라함은 PC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.
4. "문화관람실" 이라함은 각종 공연, 영화, 전시, 강좌, 발표, 행사 등의 개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.
5. "공연연습실", "음악연습실" 이라함은 각종 동아리 모임,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.
6. "청소년"이라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(이하 "청소년문화의집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②청소년문화의집은 구미시 원평동 120-18번지에 둔다.

제4조(기능과 업무)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2. 각종 문화예술 체험,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
3.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4.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
5.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제5조(운영) ①청소년문화의집은 시 직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·관리 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(이하 "수탁자" 라 한다)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요원) ①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**공무원과 전문강사 등으로**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②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문화의집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구성,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설사용 허가) ①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·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

③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 접수순에 의한다.

제9조(개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개방중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2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3. 시설의 개·보수 및 증축과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
4.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제10조(휴관)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. 단,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용자의 설비) ①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.

②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변상책임) ①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,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양도·전대의 금지)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4조(사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질병 질환자
3. 시설,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
4.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
5.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15조(준용규정)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②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종전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문화의집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.